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706
----------	------

제출연월일 : 2023. 7.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정이유

가.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항	내용	주요사항
제4조	참여기준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기준은 하남시에 등록된 운송사업자로 함
제5조	수입금공동관리 및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시와 협의하여 수입금 공동관리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함
제6조	노선입찰 등	운수사업자가 노선의 반납·폐선 의사를 밝히거나 시장이 버스 운영 체계개선을 위해 노선을 신설할 경우 해당 노선 입찰
제7조	운송사업자 선정방법 및 절차	노선입찰 시 운송사업자의 경영·사업계획 평가·제안가격 등 참고하여 운송사업자를 결정(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함)
제8조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준공영제 운영 및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제9조	표준운송원가 산정	2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 산정
제15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운송사업자 또는 협의회는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운송수입금 현황과 지출자료 등을 근거 신청
제16조	재정지원의 정산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따라 항목별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함
제17조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준공영제에 관한 인·허가 관리, 정산 관리, 운수종사자 관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위한 운송비용정산시스템 구축·운영
제18조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운행하지 않을 것 등 운송사업자의 책무 규정
제19조	조사·감사	시장은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감사할 수 있음

조항	내용	주요사항
제20조	외부회계감사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를 대상으로 매년 외부 회계감사 실시
제21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 차등 지급 등 적절한 조치 이행
제22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운송사업자 책무 위반, 조사·감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개선 및 재정지원금 환수·감액 처분조치 등 제재방안 마련
제23조	준공영제 중지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준공영제 중지
제24조	준공영제 제외 등	준공영제 운영질서 저해, 환수·감액 처분 등의 해당 운수사업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준공영제를 일정기간 제외 등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 사항 : 덧붙임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기간 : 2023.6.8. ~ 2023.6.28. [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덧붙임

가. 경기도 시·군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0. 관련부서 : 경기도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 준공영제”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버스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조정하고 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준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며 운송원가에 비하여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수입금공동관리”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가 시와 공동운수협약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선입찰”이란 시가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송수입금”이란 준공영제의 대상이 되는 모든 노선의 수입으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이 조례에 의한 재정지원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그 밖의 부대사업 수입 등을 말한다.

5.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이란 준공영제 운영 및 정산을 위하여 제반 수입 및 운송비용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준공영제 시행)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참여기준)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기준은 하남시에 등록된 운송사업자로 한다.

제5조(수입금공동관리 및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① 제4조에 따라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를 위하여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영제 대상이 되는 모든 노선의 운송수입금에 관하여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운송사업자는 협의회의 설치,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노선입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노선 입찰 경쟁을 실시하며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운수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노선의 반납·폐선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지정 신설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초로 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시는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7조(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시는 제6조에 따른 노선입찰 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운송사업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노선입찰 준공영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준공영제 관리위원회) ①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준공영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준공영제 대상 노선 선정 및 노선 운행계획 개선에 관한 사항
 3.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준공영제 정산기준·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5. 준공영제 참여·중지·제외에 관한 사항
 6. 운송수입금 관리·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7.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확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준공영제 공동비용 집행에 관한 사항
 10. 공동구매, 광고 등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11. 제5조에 따른 협의회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2.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13.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14. 노선 및 요금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운송수입금 관리 및 마을버스 발전을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하남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하남시 의회 의원
 2. 준공영제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3. 하남시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교통전문가 또는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원
 5. 하남경찰서 교통담당 소속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
 6.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직능 대표
 7. 운송사업자 대표
 8. 공인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

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준공영제 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3조(회의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2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기준을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 필요한 자료를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정할 때 포함되지 않은 운송원가 중 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유사한 항목의 산정기준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운송사업자 또는 협의회는 제15조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운송수입금 현황과 지출자료 등을 근거로 시장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 또는 협의회는 재정지원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재정지원의 정산) ① 시장은 재정지원 정산 시 제15조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따라 항목별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인상, 급격한 유가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운송비용정산시스템) ① 시장은 준공영제에 관한 인·허가 관리, 정산 관리, 운수종사자 관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위하여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비용정산시스템으로 처리되지 않은 운송원가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을 것

2.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된 마을버스의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운행하지 않을 것
3.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
4.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조사·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
5. 운송사업자는 버스 내·외부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기상악화, 감염병 등 재난에 대하여 적극 대응 할 것
6.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7.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제19조(조사·감사)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협의회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에 대하여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20조(외부회계감사) ① 시장은 재정지원의 신뢰성 및 회계처리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를 대상으로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개입찰로 회계법인을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위해 운송사업자는 시와 협의하여 지방계약법에 의한 공개입찰 통한 회계법인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전문기관은 시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제21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협의회에 대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란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서비스 품질 및 그 밖의 버스운행 관련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의 경우 성과금 차등 지급

2. 노선입찰 준공영제의 경우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당 운수사업자에 대한 한정 면허 갱신 여부 권고결정

나. 성과금 차등 지급

다. 운송원가 차감

④ 시장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경영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한 경우에는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가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19조에 따른 조사·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대표 및 협의회 회장에게 시정·개선 및 담당 직원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가 제19조에 따른 조사·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준공영제 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의 재정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2.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가 제18조에 따른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3.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운송사업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4조(준공영제 제외 등)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 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의 운영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운송사업자를 일정기간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 시장은 해당 노선에 대한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5조(업무위탁 및 대행) 시장은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또는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게 준공영제 관련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다른 조례의 적용) 준공영제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27조(세부사항) 준공영제 운영, 정산 등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기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최초로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 및 대상 노선버스는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가(등록)대수 중 실제 승객운송을 위해 노선에 투입되어 운행하는 차량의 대수로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조정 및 결정할 수 있다.

부서명		교통정책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장 석 천 호
	팀장 직위·성명	광역교통TF팀장 박 창 원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이 덕 희 (5182-1514)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운영 하는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준공영제 노선 운행계획(안)

구 분	준공영제 방식	운수사업자	노선번호	인가대수	운행대수 ¹⁾	운행(개선)대수 ²⁾	
마을버스 기존노선	수입금 공동 관리제	삼성교통	5번	7	1	0(-1)	
			50번	11	10	11(+1)	
		은방울 교통	3번	9	6	6	
			10번	10	7	10(+3)	
			100번	4	2	2	
			3-1번	2	2	3(+1)	
				3-2번	1	0	0
		대통운수	1번	13	8	8	
		오륜운수	6-1번	1	1	2(+1)	
			7번	3	2	3(+1)	
			8번	3	3	3	
			9번	1	1	1	
		하남 마을버스	2번	9	9	9	
			20번	2	1	1	
22번	2		2	4(+2)			
		소 계	78	55	63		
신규노선	노선 입찰제	(미정)	미사순환	12	12	12	
		(미정)	위례	6	6	6	
		(미정)	원도심	5	5	5	
		소 계		23	23	23	
합 계				101	78	86	

- 주1) 운행대수 : 마을버스 준공영제 간담회 2차(2023. 4. 6.) 기준 운행대수를 말하며, 준공영제 대상 대수임
 ※ 향후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 예정
 주2) 운행개선대수 : 준공영제 추진 타당성 검토 시, 준공영제 개선효과 및 예산추계를 위한 산정대수임

- 소요예산 산정
 - 마을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 총 32억/년(2024년 기준)

구 분	준공영제 방식	운영대상 차량대수 (대)	소요금액 (백만원/년)		
			운송원가 (①)	운송수입 (②)	운송수지 (①-②)
기존노선	수입금 공동관리제	63	9,228	8,163	1,065
신규노선	노선입찰제	23	3,436	1,305	2,130
합 계		86	12,665	9,469	3,196

-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시스템 구축 : 350백만원(2023년 단년도)

구 분	내 용	소요금액 (백만원)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 표준화된 기준으로 운송원가 산정	90
운송비용정산시스템 구축 용역	- 준공영제 운영 및 정산을 위한 운송수입·비용 등을 전산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260
합 계		350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350	3,196	3,359	3,530	3,710

- 주1) 2023년 :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시스템 구축 비용
 2) 2024년 : 마을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비용으로 이후 소요예산은 물가상승률 5.1%(통계청, 2022년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 추경예산 일반회계로 편성
- 2024년 : 본예산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교통건설국(주해연) 교통정책과장(석천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350	3,196	3,359	3,530	3,710	14,145
○마을버스 준공 영제 재정지원		350	3,196	3,359	3,530	3,710	14,145
재원 조달		350	3,196	3,359	3,530	3,710	14,14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50	3,196	3,359	3,530	3,710	14,145
	지방세	350	3,196	3,359	3,530	3,710	14,14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 2023. 6. 8.] [법률 제1855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50조(재정 지원)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③ ~ ⑨ (생략)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대중교통법)

[시행 2023. 2. 16.] [법률 제1905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底床)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영
5. 알뜰교통카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3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시행 2019. 9. 3.]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703호, 2019. 9. 3., 일부개정]

제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③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영을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버스 운송원가는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 2023. 5. 1.]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59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시행 2023. 4. 11.] [경기도조례 제7602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4조(한정면허)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1. 버스수입금관리 등 버스운영체계의 개선
2. 버스노선체계의 정비
3.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

제5조(한정면허 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① 관할관청이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유차고·운송부대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路線緣故度),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

- ② 관할관청은 제4조에 따라 한정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면허신청을 받아야 하며, 노선입찰방식으로 면허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관할관청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 ④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면허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조금 필요금액 또는 총 운송비용, 경영능력, 운송실적 등을 고려해야 하며, 버스이용수요와 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총 운송비용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⑤ (생략)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②~ ⑤ (생략)

7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7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12.]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878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시·군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명
1	경기도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2	파주시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3	용인시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